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가.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하는 등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이사장, 이사,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

□ 참고자료

가. 실·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결과(6-8쪽)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(6-9~12쪽)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1년을 단위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, “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예산부서의 장”을 “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 제목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7조 단서 중 “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3조 중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3호·제17조제6호·제29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·제16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한다.

제17조 각 호외의 부분·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·제2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·제2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12. (생략) 13. <u>기타 필요한 사항</u> ② (생략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 ②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당연직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시장이 <u>임·면하며</u>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<u>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②·③ (생략)</p> <p>제9조(이사)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·국장, <u>예산부서의 장</u>, <u>공인회계사·교수</u>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 ②이사는 <u>시장의 승인을 얻어</u> 이사장이 임·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된 <u>당연직</u>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(생략)</p>	<p>제5조(정관) ①----- ----- 1.~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그 밖에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1년을 단위로</u>----- -----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----- <u>임면</u>----- <u>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이사) ①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공</u> <u>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</u>----- -----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<u>이사(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</u>를 임명할 때는 <u>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</u> 중에서 임명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감사) ①감사는 시장이 <u>임·면</u> 하며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감사) ① ----- <u>임면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이사회)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</p> <p>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⑥이사회에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이사회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⑥----- -----</p>
<p>제16조(직원의 임·면)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<u>임·면</u>한다.</p>	<p>제16조(직원의 임면)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임면</u>-----</p>
<p>제17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업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17조(사업) ----- ----- -----</p> <p><u>각 호</u>-----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계리의 원칙) 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<u>계리</u>한다.</p> <p>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</u>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계처리</u>----- ②----- --- <u>회계처리</u>----- -----</p>
<p>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제17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손익금의 처리)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23조(손익금의 처리) ①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1.~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시유재산의 사용) 공단이 시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<u>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시유재산의 사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</u>」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9조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</p>	<p>제29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각 호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33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·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</p>	<p>제33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-----</p> <p>-----</p>

실·국별 협의와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 평가 등의 심의 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		○ ○ ○ ○ ○ ○
실·국별 의견수렴결과			
협의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-2009.09.22 ~2009.10.12 ○ 내 용 - 의견수렴		“해당없음”	
입 법 예 고 결 과			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 간 -2009.08.10 ~2009.08.19 ○ 방 법 - 시보게재		“해당없음”	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기업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○ 제59조(임기 및 직무)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“별 첨”</p>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관련 자료	“해당 사항 없음”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3.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
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③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위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-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